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7. 14 선고 2021가단1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5. 11.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17. 1. 10. 접수 제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의 판정 방법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이 법원 등기계 접수 제294호로 2015. 1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이 법원 등기계 접수 제2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2015. 11. 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등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일자 등에 관하여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015. 11. 21. 이루어졌다고 인정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3.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별지

목 록

1. 전남 장흥군 대 278㎡

2. 위 지 상

목조 한석지붕 단층주택 26.78㎡

부속건물

블록조 스테이지지붕 단층창고 10.25㎡

- 이상 피고 소유 중 일부 -

